유·도선 안전관리「특정감사」결과 보고

I 감사 개요

- (기 간) '19. 6. 5.(수) ~ 6. 19.(수)
- (대 상) 유·도선 안전관리 전(全) 분야
 - ※ 유·도선(338척): 인천(77척), 통영(90척), 여수(40척), 서귀포(26척), 그 외 20척미만
- (감 사 단) 감사담당관 등 8명

Ⅱ 감사 중점 분야

- ❖ 유. 도선 사업자 안전운항의무 및 승객의 준수시항 등 이행여부
- 유. 도선에 실제 승선하여 사업주, 선원 등 종사자 및 승객(일반국민)과의 인터뷰를 통한 구조적인 안전사고 위협요인 발굴
- 🧩 🌣 긴급출동태세 및 안전사고 예방의 적정성
 - 유 도선 선착장 관할 파 출장소 경찰관과의 현장소통(애로 건의 등) 강화
- 3 ❖ 유도선 면허발급, 안전관리 등 국민 불편사항 및 갑질행위 여부

Ⅲ 감사결과 총괄

번호	부서명	내 용	처 분
1. 일	무개선		
1-1	해양안전	 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공동소관 개선 필요 ■ 해수면 유·도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"유선 및 도선 사업법" 공동소관 지정 추진 필요 * 현(現) 우리청 공동소관 법안 : 경찰공무원법, 밀항단속법 등 ■ 소관부서 행정안전부와 법령개정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해양정책환경 및 안전변화를 즉시성 있게 법령에 반영 곤란 * '18년 유·도선법 전면개정을 추진하였으나, 부처 의견 등으로 지연 	권고
1-2	해양안전	□ 유·도선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개선 필요 ■ 전국 유·도선 인명구조요원 857명중 838명(98%)이 해양수산연수원 교육* 이수, 19명(2%)만 인명구조자격증 취득자로 구성 *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(유·도선 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) ■ 그러나 해양수산연수원 교육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과정,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원이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선원법상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인명구조요원으로 지정되고 있음 ■ 인명구조요원의 실제 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 지정 등 자격기준개선 및 체계적 관리 필요	권고
1-3	해양안전	□ 낚시유선 해양사고 위험성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필요 수상에서 고기잡이 유락(遊樂) 관련 영업을 주로 하는 유선(일명 낚시유선)은 전국적으로 총 54척(인천 53척, 여수 1척)이 운영 중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계 내 낚시영업행위로 선박충돌 위험성 상존 및 낚시편의를 위한 현측난간 제거, 선내음주 등 불법행위 빈번 ※ '16~'18년 낚시유선 사고 12건, 위법행위 형사처분 6건 낚시유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전박 통항 방해 안전설비(난간) 제거 선내 음주	권고

번호	부서명	내 용	처 분
1-4	해양안전	□ 유·도선 내 구명조끼 유아·어린이용 구분 비치 필요 ■ 유·도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소아용 구명조끼(송선정원의 20%)를 비치하고 있으나, 이를 유아가 착용할 경우 헐거워 벗겨 지거나 목의 압박 등 신체적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음 ■ 현행 선박안전법과 선박구명설비기준(해양수산부 고시)은 어린이와 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비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어린이와 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 비치 필요	권고
		<구명조끼 분류기준(선박구명설비기준)> 기준 유아 어린이 성인 15kg미만 15~43kg미만 43kg이상 기준 100cm미만 100~155cm미만 155cm이상	
1-5	해양안전	□ 유·도선의 선원과 승객 구분을 위한 선원 복식 필요 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 및 선원들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유도선 선원 복식(제복, 모자, 완장 등) 착용 필요 ※ '15. 7월 여객선 선원 제복착용 의무화(선원법 제83조) 여객선 선원의 모습(제복착용) 도선 선원의 모습(승객과 구분불가)	권고
1-6	해양안전	□ "유·도선 운항관리 시스템" 정보 이용권한 확대 필요 ■ 현장에서 유도선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파출소 직원들의 유·도선 운항관리 시스템* 정보 이용권한 확대 필요 * 유·도선 제원, 최신 운항·면허 정보, 각종 법령 위반사항 등 정보를 입력·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출소에서는 운항실적만 입력가능(17.4월 개통)	권고
2. 7	디적사항		
2-1	해양안전	□ 파출소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도선이용 방식 부적정 ■ 00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해운회사(00 해운, 000해운)을 대상으로 파출소 순찰차량의 도선 이용요금 감면을 요청하여 무료로 차도선을 이용함 ※ 000파출소의 경우 파출소장의 도서지역 출장소 지도점검을 위해 무료로 도선을 이용함(총 20회 54만원 상당)	기관 주의 (00 서)